

제2303호

고양시보

2026년 8월 25일 (화)

차

례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6-23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일산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6-1925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보궐) 공개모집 공고

9

고양시 고시 제2026-23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일산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673-4번지의 「일산제1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일산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고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91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일산동구 중산동 1669-4번지 일원	233,014.2	고양시 고시 제2010-246호 (2010.11.2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결정 내용	변경 사유
91	- 구역명 변경 - 기정: 일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 변경: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구역명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71	노외주차장	일산서구 일산동 1673-4번지, 1673-5번지	663.2	증) 470.9	1,134.1	고고제31호 01-04-09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변경 사유
71	노외 주차장	노외주차장 확장 기정) 663.2㎡ 변경) 1,134.1㎡ (증 470.9㎡)	주차수요 증가로 기존 주차면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폐쇄된 인접 게이트볼장(공공공지26)을 일산제1공영주차장(주차장71)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공간시설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26	공공공지	일산서구 일산동 1673-4번지	470.9	감) 470.9	-	고고제31호 01-04-09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변경 사유
26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기정) 470.9㎡ 변경) 0㎡ (감 470.9㎡)	주차수요 증가로 기존 주차면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폐쇄된 인접 게이트볼장(공공공지26)을 일산제1공영주차장(주차장71)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주차장용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C1	1,770.8	2,241.7	1	일산동 1681-3번지	201.40		-
C2			2	중산동 1667번지	357.20		-
C3			3	일산동 1673-5번지	663.20	1,134.10	노외주차장 확장
C4			4	중산동 1659번지	549.00		

■ 주차장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결정 내용	변경 사유
C3	노외주차장 확장 기정) 663.2㎡ 변경) 1,134.1㎡ (증 470.9㎡)	주차수요 증가로 기존 주차면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폐쇄된 인접 게이트볼장(공공공지26)을 일산제1공영주차장(주차장71)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	
C1 C2 C3 C4	도면번호와 동일	용도	허용용도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C1, C3	50% 이하
				C2, C4	60% 이하
		용적률		C1, C3	250% 이하
				C2, C4	23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분	기정	변경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고양시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민간부문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중 민간부문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본 지침은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과 제1종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본 지침은 일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과 제1종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15. “최고층수”라 함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6. “최저층수”라 함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1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6.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구분	기정	변경
	- 제18조 (건폐율·용적률·층수) ③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의 위치가 정하여진 곳에는 지어지는 지상부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 지정된 아파트 유형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단지 스카이라인, 미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 있다.	- 제18조 (건폐율·용적률·층수) ③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의 위치가 정하여진 곳에는 지어지는 지상부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 지정된 아파트 유형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단지 스카이라인, 미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 있다.
	- 제24조 (주차장 설치기준)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동선이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걸쳐 연결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주택단지내 도로를 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에서 내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이 되는 구조로 한다.	- 제24조 (주차장 설치기준)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동선이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걸쳐 연결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주택단지내 도로를 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에서 내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이 되는 구조로 한다.
	- 제29조 (부대복리시설)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놀이, 휴게, 주민운동시설 등의 위치로 지정된 곳에는 다음의 부대복리시설 중 2가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 어린이 놀이터 1개소 2. 주민운동시설 3. 노인정 4. 휴게시설	- 제29조 (부대복리시설)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놀이, 휴게, 주민운동시설 등의 위치로 지정된 곳에는 다음의 부대복리시설 중 2가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 어린이 놀이터 1개소 2. 주민운동시설 3. 노인정 4. 휴게시설
	- 제30조 (건물의 배치)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방향이 지정된 위치에는 지시된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제30조 (건물의 배치)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방향이 지정된 위치에는 지시된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제39조 (대지의 분할)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모든 획지는 2이상의 독립된 획지로 분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획지 합병후 원획지 규모로 환원은 허용한다.	- 제39조 (대지의 분할)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모든 획지는 2이상의 독립된 획지로 분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획지 합병 후 원획지 규모로 환원은 허용한다.

구분	기정	변경
	- 제43조 (차량출입구) ① 차량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차량출입구간으로 지정된 곳 2.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통과교통이 적고, 위계가 낮은 도로 ② 차량출입구에 대한 사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도록 하되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제43조 (차량출입구) ① 차량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에서 차량출입구간으로 지정된 곳 2.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통과교통이 적고, 위계가 낮은 도로 ② 차량출입구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도록 하되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제52조 (대지의 분할)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으나 당해 허가권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대지의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다.	- 제52조 (대지의 분할)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으나 당해 허가권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대지의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다.
	- 제77조 (건축허가 및 심의)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허가 및 심의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도서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표기 및 필요한 경우 관련부분 상세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해당 규제, 유도, 권장사항의 명기 다. 건축물의 조망 및 스카이라인 계획 라.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색채, 마감재료 등) 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 제77조 (건축허가 및 심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허가 및 심의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도서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표기 및 필요한 경우 관련부분 상세 나.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해당 규제, 유도, 권장사항의 명기 다. 건축물의 조망 및 스카이라인 계획 라.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색채, 마감재료 등) 마.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구분	기정	변경
	- 제79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지정 및 변경,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79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지정 및 변경,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80조 (지침의 변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 조정,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기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침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 제80조 (지침의 변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 조정,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침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조 (목적) 기정) “고양시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 제2조 (지침의 적용) 기정)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일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4·18·24·29·30·39·43·52·77·79·80조 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명칭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2.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기정) “고양시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 공고 제2026-1925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고 양 시 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합계	도시계획	건축	교통	교육	환경	토목
위촉직 위원	1	1	-	-	-	-	-

2. 임 기 : 위촉일 ~ 2028. 1. 21.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제5항에 따른 전임자 임기 적용

3. 주요 심의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4. 위촉자격

- 모집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모집 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모집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 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이 5년 이상

5. 선정기준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된 사람의 경우에는 위촉 제한
- 고양시 소관 2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 제한
 - ※ 다만,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
- 고양시 거주자나 고양시 직장 근무자를 가급적 우선 선정
-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의 경우 지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 제한
 - ※ 다만,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마지막 주 수요일 심의 및 자문에 참석할 수 있는 자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도시계획위원회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 8. 25. ~ 2026. 9. 8.(18:00까지)
- 접수처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신관 지하1층, 전화 031-8075-3075)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신관(주교동 고양시청)]
- 제출방법 : 방문접수(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전자 우편(timewoo@korea.kr)

7.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사진부착) 각 1부.
※ 학력(학교, 전공학과, 졸업논문명 등), 주요근무경력,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 실적은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 발행) 1부.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8.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

9. 참고사항

- 위원 선정 50% 이상은 관내 거주자 및 관내 소재 직장 근무자를 우선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참석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 위원회 명단이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 031-8075-3075)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번호		위원회명	고 양 시 도시계획위원회	전공분야	
성 명	(한글)	성별	남	주민등록번호	~
	(한자)		여		
현 주 소 (주민 등록상 거주지)			전화 번호	자 택	
				사 무 실	
				휴대전화	
				E-mail	
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현근무지					
주요경력 (전공분야 및 위원회 활동위주로 작성)	○ ○ ○ ○ ○				
자격사항 (전공분야 위주로작성)	○ ○ ○ ○ ○				
첨부서류 : 1.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 3월내 발행)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3. 자기소개서(사진 첨부) 1부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지원자 성 명 : (인) 주 소 : 고 양 시 장 귀하					

자기 소개서

성 명		사진	JPG 파일 (1년 이내 촬영 사진)
소 속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활동 경력 - 전, 현직 위원회 활동경력 모두 기재 예시) 2022.01.02~ 2024.01.01 : 00시 도시계획위원 ○ 논문 및 저서 - 주요 사항만 기재 ○ 학력 - ○ 주요 실적 및 상벌 사항 -		
지원 동기			
고양 시정에 바라고 싶은 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참석 여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및 마지막 주 수요일 참석 여부 명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고양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위촉) 및 안내, 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개인정보 수집범위)

- 개인 식별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소명함판 사진
- 연락처 : 주소(현 거주지, 근무처), 전화번호(주택, 근무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학력사항 : 최종 학력(학위) 및 전공(세부전공)
- 기타사항 : 모집분야, 주요경력, 자격사항, 참여프로젝트, 위원회·자문활동, 수상경력 등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귀하께서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 안함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정부의 정책 기획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상기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범위의 정보
- 정보의 이용목적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응모) 분야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통계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기간(5년) 경과시 파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 안함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로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위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였으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서명)

고양시장 귀하

공개모집 지원서 작성 요령

1. 공개모집 응모자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응모자 본인의 필체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2. 지원서 작성 시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원서 및 기타 관련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지원서 등의 세부 작성요령은 아래에 따릅니다.
 - 가.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 나. “전공분야”는 해당 전공 분야 명을 반드시 기재
 - 다. 내부 심사를 통하여 자격, 경력, 전문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므로 경력사항, 참여프로젝트, 위원회 활동, 저서 및 논문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자격증명서 사본 등
 - 라.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 경력에 자세히 기재